

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 수의매각 정비 등 국유재산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6.3.17.~4.27.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26.3.17.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5.12.15.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26.3.17.~'26.4.27.)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유재산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강경구 (044-215-5150)
	국유재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석훈 (ksh276840@korea.kr)

